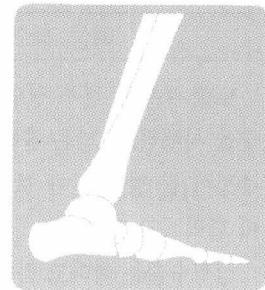


신체장애 등급 및 장해평가

- 팔 및 다리 장해 -



1. 팔의 장해

가. 장해등급표

(산재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2000.7.29 개정)

장해	장 해 내 용
제 1 급	5.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 2 급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4 급	2. 한 팔을 손목간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5 급	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 6 급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7 급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제 8 급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제 10 급	11.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 12 급	6.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 14 급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가락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나. 해설

(1)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어깨 관절에서 견갑골과 상완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사이에서 상완골이 절단된 자 또는 팔꿈치관절에서 상완골과 요골 및 척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2)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팔꿈치 관절과 손목관절사이에서 절단된 자 또는 손목 관절에서 요골 및 척골과 수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3)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함은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 · 팔꿈치관절 · 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가 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자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마비된 자를 말한다.

(4)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의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를 말한다.

(5)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6)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신체장애 등급 및 장해평가

자를 말한다.

(7) 팔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 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자는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8) 선천성을 제외한 습관성탈구가 있는 자는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자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자를 말한다.

(10)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요골 또는 척골 중 한 쪽에 가관절이 남은 자를 말한다.

(11)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상완골의 변형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의 변형으로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65도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이상인 자를 말하며, 장관골의 골절부가 양방향에 단축 없이 유착되어 있는 자를 제외한다. 다만, 요골 또는 척골 중 한 쪽만의 변형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뚜렷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 “노출된 면”이라 함은 손바닥 및 손등을 포함한 팔꿈치관절 이하를 말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1) 같은 팔에 2이상의 기질적 장해가 남은 경우

(2) 같은 팔에 결손장애와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 다만, 기능장애의 정도에 불구하고 손목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제5급, 팔꿈치관절이상을 잃고 관절에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제4급을

인정한다.

(3) 같은 팔의 3대 관절에 기능장애(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는 제외)가 남은 경우. 다만, 한 팔의 3대관절 전부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8급을 인정한다.

(4) 한 팔의 3대 관절에 기능장애와 같은 팔의 손가락에 결손장애 또는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

라. 한 팔에 장해가 있던 자가 새로 다른 팔에 장해가 남은 경우

한 팔에 장해가 있던 자가 새로 다른 팔에 장해가 남은 경우 또는 같은 팔(손가락을 포함한다)의 장해정도를 가중하고 다른 팔에도 장해가 남아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합등급으로 인정하여 가중의 경우에 준한다.

(1)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제1급

(2)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제2급

(3)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1급

2. 다리의 장해

가. 장해등급표

(산재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장해 등급	장 해 내 용
제 1 급	7.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 2 급	4.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4 급	5. 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5 급	3.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 6 급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장해 등급	장해 내용
제 7 급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제 8 급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제 10 급	9.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 12 급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제 13 급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제 14 급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나. 해설

(1)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고관절에 있어서는 관골과 대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 고관절과 무릎관절과의 사이(대퇴부)에서 절단된 자 또는 무릎관절에서 대퇴골과 하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2)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자 또는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3)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족근골(종골·거골·주상골과 3개의 계상골로 형성되어 있다)에서 절단된 자 또는 중족골과 족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4)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3대 관절(고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 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나 3대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의 자를 말한다.

(5)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를 말한다.

(6)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7)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8)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자는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9) 선천성을 제외한 다리의 습관성탈구와 탄발슬(彈發膝)이 있는 자는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자 또는 경골과 비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자를 말한다.

(11)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경골 또는 비골중 어느한 쪽에 가관절이 남은 자를 말한다.

(12)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팔에서의 경우와 같이 그 변형을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6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이상으로서 대퇴골의 변형 또는 경골의 변형이 있는 자를 말하며, 장관골의 골절부위가 정상위로 유착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체장애 등급 및 장해평가

다. 준용등급결정

(1) 같은 다리에 2개 이상의 기질적 장해가 남은 경우

(2) 같은 다리에 결손장해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같은 다리의 3대관절에 기능장해(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는 제외)가 남은 경우. 다만, 한 다리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8급, 한다리의 3대관절 전부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4) 한 다리의 3대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다리의 발가락에 결손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5) 한 다리의 연장으로 인하여 정상의 다른 다리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라. 한 다리에 장해가 있던 자가 다시 다른 다리에 장해가 남은 경우

한 다리에 장해가 있던 자가 다시 다른 다리에 장해가 남았거나 같은 다리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고 다른 다리에도 장해가 남아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합등급으로 인정하여 가중의 경우에 준한다.

(1)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제1급

(2)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제2급

(3)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제4급

(4)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1급

마. 기타 다음의 1의 경우에는 그 중 상위의 등급으로 결정한다.

(1) 골절제가 관절부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2) 장관골의 골절부위가 부정유합된 결과 장관골의 기형 또는 가관절과 다리의 단축장해가 남은 경우

(3) 대퇴골 또는 하퇴골의 골절부에 가관절 또는 장관골의 기형이 남고 그 부위에 제12급에 해당되는 동통이 남은 경우 

제22회 근로문화예술제 · 근로자 연극제 9월 공연일정

작 품 명	공연장소	공연일시
그 여자의 소설	가산문화센터	15(토) 17:00 16(일) 15:00
단편 '사랑'	여해문화공간	20(목) 19:00
파도 타는 사람들	판악구 민방위 교육장	21(금) 19:30 22(토) 18:00
청춘은 즐거워	가산문화센터	22(토) 18:00
매직타임	여해문화공간	23(일) 14:30 17:00
자살에 관하여	경기도 문화 예술회관	23(일)~24(월) 19:00
용띠 위에 개띠	현대전자 내 아미문화센타	25(화) 19:00
팽	여해문화공간	26(수) 19:30
돼지사냥	포항시 효자아트홀	26(수)~27(목) 19:30

공연문의 : 02)6700-465~6

www.welco.or.kr에서 초대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